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미시장

2. 제안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구미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농특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 운동 일환으로 농업인이 직접 생산·가공한 농특산물을 유통과정 없이 판매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도시민의 건강증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및 위탁취소(안 제10조, 안 제11조)
-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운영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예산조치 : 기획예산담당관실 합의
- 규제심사 : 규제개혁 T/F팀 합의
- 기 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은,
 - 구미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산자인 농업인이 수요자인 일반시민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직거래장터를 개설, 농축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소비자인 도시민에게 믿을 수 있는 양질의 우수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